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주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경과보고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기조발제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 패널

원전 :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

언론 : 박건식 (한국PD교육원 원장)

공공기록 : 주서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7일 (금) 오후 5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5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참고]

- 미국 회의공개법 번역문 35
- 미국 회의공개법 (§552b. Open meetings) 원문 43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개요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의 시민 참여 보장하고자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현행 법령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회의공개법 및 운영 현황 소개하고, 둘째,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우리나라 법제 분석, 셋째, 회의록 생산 관련한 우리나라 지정회의 운영현황 분석한다. 넷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정회의 운영현황은 국무총리 참석회의,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별 현황,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 유무,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형태, 회의록 공개여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2017년 4월 정부 조직도 상의 71개의 기관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을 아래와 같다.

2008년-2016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① 지정현황 목록(기관명 및 회의명), ② 개별 지정회의의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③ 회의록 작성 유무, ④ 회의록 작성 형태, ⑤ 공개 여부 ⑥ 비공개 시 사유 등을 포함한 운영현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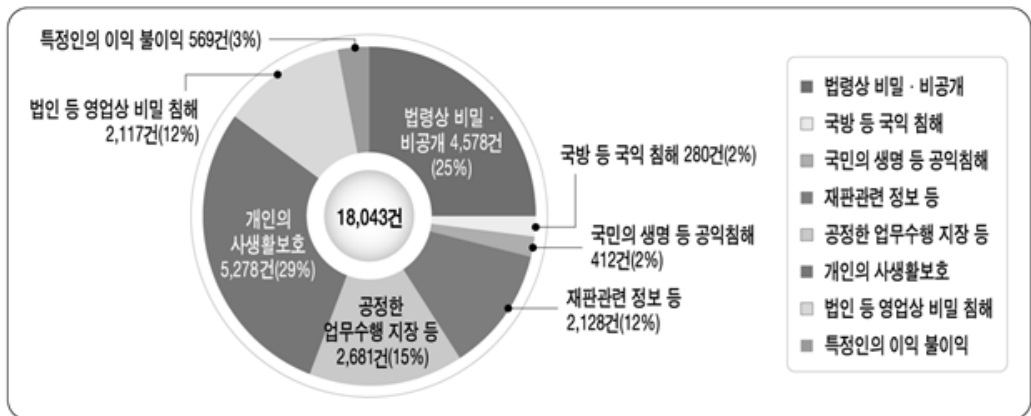
회의공개제도 연구의 필요성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자치부. 20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28.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을 비밀로 하여 두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한다(변주연, 2008).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운영현황

§ 552b. Open meetings.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a) 이 section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관’이란 section 552(e)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구가 이끄는 기관 그리고 기관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의 분과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구성원의 다수를 해당 직위에 임명한다.
- (2) ‘회의’란 공식 기관 업무의 공동 수행 또는 처분을 결정하거나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개별 기관 구성원 수 이상이 참여한 심의를 의미한다.
- (3) ‘구성원’이란 기관이 이끄는 합의기구에 속하는 개인인을 의미한다.

(b) 구성원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subsection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 기관 회의의 전 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c) 기관이 공익을 위해 다르게 판단한 경우에 subsection (b) 두 번째 문장은 기관 회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의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경우, subsection (d)과 subsection (e)는 이 section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 회의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A) 행정 명령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국방이나 외교 정책을 위해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허용되고, (B) 해당 행정 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분류된 사안
- (2) 오로지 기관의 내부 인사 규칙 및 관행 관련 정보
- (3) 법률(section 552 이외)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 단, 해당 법률은 (A) 쟁점에 관한 재량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안을 규정하거나, (B) 구체적 보류 기준을 확립하거나 보류되는 사안의 구체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 (4) 개인에게서 얻거나 특권이 성립됐거나 기밀인 영업 비밀 및 상업적 정보나 재정적 정보
- (5) 특정인의 범죄를 고발하거나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견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 (6) 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개인적 성질의 정보

(7)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수사 기록 또는 (서면) 수사 기록에 포함됐을 정보. 단, 이러한 기록이나 정보의 제출은 (A) 법 집행 절차를 방해, (B)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결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 (C) 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 (D)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수사 중에 수집하거나 합법적 국가 안보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집한 기록의 경우에 취재원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기밀 정보를 공개, (E) 수사 기법과 절차를 공개, (F) 법 집행 요원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8)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에 의해, 그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해 준비된 검사, 운영 또는 현황 보고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정보.

(9) 성급한 공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A) 통화, 증권, 상품 또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의 경우, (i) 통화,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현저한 금융 투기를 야기하거나 (ii) 특정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정보

(B) 기타 기관의 경우, 기관이 제안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단, 기관이 제안 조치의 내용이나 성질을 이미 일반에 공개했거나 법률에 따라 기관이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B)가 적용되지 않는다.

(10) 기관의 소환장 발부, 민사 소송이나 절차, 외국 법원이나 국제 재판소의 소송 또는 중재에 대한 기관의 참여, 이 title section 554의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 청취 후 기록에 대한 결정 등 기관의 공식 재결에 관한 구체적 사건에서 기관의 시작, 수행이나 처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정보

(d) (1) subsection (c)에 따른 조치는 (subsection (a)(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기관 구성원의 전체 중 다수가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만 취한다. 기관 구성원의 표결은 각각의 기관 회의에서 subsection (c)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 또는 subsection (c)에 따라 유보하기로 제안된 정보에 대해 이뤄진다. 일련의 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일련의 회의가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예정된 경우, 일련의 회의에서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이나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1회 표결할 수 있다. 해당 표결에 참여한 기관 구성원 각각의 표결은 기록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회의의 일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subsection (c) paragraph (5), (6), (7)에 언급된 이유 중 하나를 근거로 기관이 해당 부분을 일반에 비공개

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기관은 구성원 1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기록 표결로써 표결한다.

(3)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이 이뤄지면, 기관은 1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 결과 사본을 일반에 공개한다. 회의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기관은 subsection (d)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 사항과 해당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조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인원과 그 소속에 관한 목록을 1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한다.

(4) 회의의 대부분이 subsection (c) paragraph (4), (8), (9)(A), (10) 또는 이러한 사유의 결합을 근거로 적절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거나,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시작할 때에 회의의 비공개분을 비공개하기로 기록 표결로써 표결하는 경우, 규칙으로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하는 표결의 사본이 일반에 공개된다. subsection (d) paragraph (1), (2), (3) 그리고 subsection (e)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회의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은 subsection (c)에 따라 비공개할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 및 회의 일부의 시간, 장소 및 주제를 일반에 공고한다.

(e) (1) 각 회의에서 기관은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일반 공개 여부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기관 구성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고한다.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를 조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공고하고, 회의를 조기에 소집하는 경우에 기관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그리고 일반 공개 여부를 공고한다.

(2) 회의의 시간이나 장소는 기관이 이러한 변경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일반에 공고한 경우에만 paragraph (1)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회의의 주제 또는 회의나 회의 일부의 일반 공개 여부에 대한 기관의 결정은 (A) 기관 전체 구성원의 다수가 기관 업무에 필요하고 변경에 대한 조기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고, (B) 기관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러한 변경과 해당 변경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공고한 경우에만 subsection (e)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3) 또한 subsection (e)에 따른 각 공고 직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회의의 공개 여부, 절차의 변경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한 공지 사항은 발행을 위해 공보에 제출된다.

(f) (1) subsection (c) paragraph (1)에서 (10)에 따라 비공개된 모든 회의에서 기관의 법

무자문위원이나 최고 법률책임자는 자신의 의견으로써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련하여 개별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 기관은 이러한 증명서의 사본을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기재한 회의 감독관의 진술서와 함께 보유한다. 기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각 회의의 절차나 회의의 일부를 전부 기록하며, 적절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한다. 단, subsection (c) paragraph (8), (9)(A), (10)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의 경우, 기관은 이러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 중 하나를 유지한다. 해당 회의록에는 논의된 모든 사안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고, 취해진 조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덧붙여 각 사안에 제기된 각자의 입장을 서술하며 호명 투표의 기록(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과 그 사유가 기재된다.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이러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관은 의제의 항목 또는 회의에서 얻은 증인의 증언 항목에 대한 논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paragraph(1)에서 요구되는 경우)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즉시 일반에 공개한다. 단, 기관이 subsection (c)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결정한 논의나 증언의 항목은 제외된다.

발언자 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필사 기록, 회의록 또는 전자 기록의 필사 기록 사본은 복사하거나 필사하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제공된다.

기관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에 대한 필사 기록의 완전한 사본, 회의록의 완전한 사본 또는 완전한 전자 기록을 해당 회의 이후 최소한 2년 또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가 개최되도록 한 기관의 절차가 종료된 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유지한다.

우리나라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제도

우리 법령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은 없고, 회의록과 관련된 법령 조항이 법17조 시행령 18조 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2016.8.29., 일부개정]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법 비교

Sunshine Actc	vs	공공기록물관리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제17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공개의 원칙 천명		회의록 생산의무 부여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관리, 공개		회의록 작성, 관리
-		지정회의 제도
연방정부 산하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10가지 비공개 예외규정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비공개

출처: 김유승, ‘회의공개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회의록 생산, 관리

미국은 회의제도를 통해서 회의록을 생산,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기록물법을 통해서 회의록은 생산, 관리(기록물법을 통해서 회의록을 생산하다보니 회의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이혜진, 정은경, 2012)

회의록 공개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국민에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이 필요한 경우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허용한다.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 회의록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의록의 비공개 기준을 정보공개법에 따르고 있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정회의 운영 분석

지정회의 현황

지정회의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이 지정하는 회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회의 이후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이 생산되어야 한다.

아래 <표1>은 ‘2014년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계획(안)’에 정리된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 현황이며 폐지된 회의, 신규회의를 반영하였다.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0개,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23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회의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8개로 총 79개 회의가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는 연도별 개최수, 회의록 작성 유무 등이 ‘정보부존재’로 결정되어 본 연구에서 더 이상의 세부 분석은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71개 회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1>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 현황

구분	대상회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0개)	녹색성장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

구분	대상회의
	업기술보호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23개)	고용정책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국가교통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시도경제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8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군무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출처: 국가기록원, 2014년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계획(안) 수정

지정회의 현황을 보면, 대통령기록관 소관을 제외하고 2015년 당시 23개 기관에 71개 위원회가 있다.

<표 2>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14개 지정회의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7개 지정회의, 보건복지부 6개, 농림축산식품부 5개,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4개 순으로 지정된 회의가 많다.

〈표2〉 기관별 회의명

기관	회의명	기관	회의명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보건복지부(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사회보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2)	금융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국민안전처(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무역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 선정 심의위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사혁신처(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여성가족부(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국방부(3)	국방부 정책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군무회의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국토교통부(2)	국가교통위원회	해양수산부(2)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 인등 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2)	경제관계장관회의	행정자치부 (1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시도경제협의회		기록물공개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도서개발심의회
	축산발전심의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기관	회의명	기관	회의명
미래창조과학부(4)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방위사업청	정보공개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행정협약조정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별 지정회의의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지정회의는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에는 2차례에 걸쳐 정해졌다. 2001년에 8개 회의가 지정회의로 정해졌으며, 2005년에는 4개 회의가 추가로 지정회의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22개 회의가 지정회의로 대폭 늘어났으며, 2011년 6월 30일 5개 회의가 추가로 정해졌다. 이후, 2013년 8월 20일에는 32개 회의가 지정회의로 정해져 가장 많은 수의 회의가 지정회의가 되었다. 2014년에는 대통령기록관 소관 10개 회의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 개최수를 보면, 먼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회의가 개최 총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제외한 회의 유형 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②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③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따라 지정회의 개최수, 회의록 작성유무, 회의록 형태, 회의록 공개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3>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 2001년 지정된 회의가 2건, 2005년 1건, 2009년 4건, 2011년 4건, 2013년 9건이다. 개최 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바이오안전성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회의 개최수를 보면, 20개 회의 중 5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콘텐츠산업진

흥위원회(2011년 지정), 양성평등위원회(2005년 지정),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2011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01년), 사회보장위원회(2009년)이다. 이 중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011년 지정)가 15회 개최로 가장 많다. 지정회의가 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회의는 6개 회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불과하다.

또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회의(중앙민방위협의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도 있다.

〈표 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2009		0	0	0	0	2	0	2	4	0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협의회	2013							■	0	0	★		
국민안전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3		◎	◎	◎	◎	◎	■	3	3	0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2011		◎	◎	0	0	0	0	1	1	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09		1	1	1	2	0	3	1	9	0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2	1	0	2	10	15	0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01	■	■	0	0	■	4	3	4	11	0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위원회	2001	■	■	0	2	■	1	0	2	5	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09		0	0	0	0	5	4	2	11	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09		1	1	2	2	1	1	1	9	0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013						0	1	3	4	0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013						■	■	0	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11				0	0	■	■	3	3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2005	2	2	1	1	2	2	2	2	2	12	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 회	2013						1	3	2	6	0		
통일부	6·25전쟁남북피해진 상규명및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2011				1	1	4	5	1	12	0		
행정자치부	서해5도지원위원회	2013						1	1	2	4	0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2013						1	0	1	2	0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원회	2013						1	1	2	4	0		
행정자치부	5·18민주화운동관련 자보상지원위원회	2013						0	0	0	0	★		

색표시 : 해당 연도 미지정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표 4〉는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의 회의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이다.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역시 개최 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001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된 회의는 6건, 2005년 3건, 2009년 5건, 2013년 9건이다. 23개 회의 중 9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2005년 지정)는 지정된 이후 꾸준히 매년 20회 정도 개최하여 총 158회 개최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2005년 지정)는 91회 개최되었다.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이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2013년 지정)와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2013년 지정)는 해당 기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표 4〉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2005	■	24	19	23	24	23	21	24	158	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2001	0	0	1	2	2	0	■	1	6	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2005	■	■	2	4	■	■	■	3	9	0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2001	0	0	0	0	0	0	0	2	2	0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2005	0	0	0	0	0	25	37	29	91	0		
기획재정부	시도경제협의회	2001	0	1	1	1	1	2	2	1	9	0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2009		0	0	0	1	3	2	4	10	0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2013						4	4	1	9	0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2001	■	■	0	1	■	1	1	1	4	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회	2009		0	8	0	0	0	0	0	8	0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 명위원회	2013						0	0	0	0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3						■	■	11	11	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원회	2013						■	■	0	0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2001	■	0	4	5	3	■	■	7	19	0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	2001	■	0	0	0	0	■	■	1	1	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	2013						9	10	11	30	0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009		0	0	0	0	1	1	1	3	0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2009		0	0	0	0	0	0	2	2	0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	2013						3	4	6	13	0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심의회	2013						0	0	1	1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2013						2	2	2	6	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	2013						6	4	7	17	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09		■	9	7	8	10	12	8	54	0		

색표시 : 해당 연도 미지정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중 2009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회의는 13건, 2011년 1건, 2013년 13건이다. 전체 28개 회의 중 절반이 넘는 14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정회의로 정해진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국무총리나 차관급 이상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보다 회의 개최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는 2009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었고 7년 동안 410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정연도는 다르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0 이상 개최한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2009년) 177회, 금융위원회(2009년) 168회, 증권선물위원회(2009년) 133회이다.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회의는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등 7개 회의이다.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는 2013년 지정된 이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표 5〉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현황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2009		■	80	77	72	46	61	74	410	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09		30	25	30	22	25	■	45	177	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09		■	24	40	36	28	30	10	168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2009		■	22	24	29	23	25	10	133	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	21	21	0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2013							■	12	12	0				
국민안전처	합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2013							■	3	3	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2013							■	9	9	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2013							■	3	3	0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2013							■	3	3	0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2013						0	0	9	9	0				
국방부	국방부 정책회의	2009		5	4	5	6	5	8	9	42	0				
국방부	군무회의	2009		2	2	2	2	3	2	1	14	0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 의위원회	2013						0	9	0	9	0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2009		1	5	0	1	3	1	4	15	0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2009		0	0	0	0	0	1	1	2	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심의회	2009		0	1	2	0	0	1	1	5	0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1				0	0	3	8	12	23	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09		1	8	11	0	0	20	11	51	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09		11	12	12	13	■	■	15	63	0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2009		0	10	11	12	12	9	13	67	0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2013						0	0	0	0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13						4	4	6	14	0				
행정자치부	기록물공개심의회	2013						0	6	3	9	0				
행정자치부	기록물평가심의회	2013						1	1	1	3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2013						4	3	1	8	0
행정자치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2013						3	3	3	9	0
행정자치부	행정협약조정위원회	2009		0	0	1	1	0	1	0	3	0

색표시 : 해당 연도 미지정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전체적으로 보면,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100회 이상 회의를 개최는 주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회의인데, 10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5개 회의 중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뿐이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회의는 2013년도에 지정된 6개 회의인데, 5개 회의는 국무총리와 차관급 이상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이고, 이중 1개 회의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회의이다.

지정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회의로 정해질 만큼 중요한 회의일 텐데, 정해진 이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회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비공개 사유

이하에서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그리고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들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 서면회의만 개최되었거나(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회의(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회의)는 회의록 작성형태나 공개 여부를 알 수 없다.

회의 형태를 ‘알수 없음’에는 서면/ 대면의 구분 없이 회의수만 있는 경우이다(녹색성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더 많이 개최된 회의는 20개 회의 중 4개 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이다.

회의록 작성형태를 보면,

- ① 요지작성만 하는 경우 5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② 속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3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 ③ 녹음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1건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 ④ 요지작성,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2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⑤ 요지작성, 녹음기록으로 3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⑥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1건 (녹색성장위원회),
- ⑦ 서면회의만을 진행하거나 개최건수가 없어 회의록 형태가 없는 경우 5건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별로 회의록 작성형태는 다양하나 요지작성만을 하는 경우가 5건으로 많다.

회의록 공개여부를 보면, 공개하는 회의록은 6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1건(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이중 요지작성이 아닌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참석 회의 전체 20건 중 4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뿐이다.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8건의 회의 중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이 중 제5호(과정 중)와 제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에 조항으로 기재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등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 포함 및 국가안보 영향 등 심의라고 하였다.

〈표 6〉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20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녹색성장위원회			13	○	○	○	비공개	2, 6
중앙민방위협의회	1						비공개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9	7			○		부분 공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8	4			○		공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3	3		○			공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	12		○	○		비공개	5, 6
원자력진흥위원회		4			○		비공개	1, 5, 6
사회보장위원회			14	○			공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	7		○		○	공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			공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0	○			비공개	
양성평등위원회	2	3		○		○	비공개	5, 6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4	3		○		○	비공개	5, 6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14	8				○	비공개	6

대상회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서해5도지원위원회	4							
자원봉사진흥위원회	3	1		○	○		공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4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지원위원회	0	0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의 회의 형태’를 <표 7>에서 보면, 회의를 서면/대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회의수만 제공한 경우 8건, 자료를 공개 받지 못한 경우가 3건(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다. 서면회의보다 대면 회의가 많은 경우는 5건(국가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다. 이 중 정보공개위원회는 대면회의만을 진행하였다. 서면회의만 진행한 경우는 2건(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를 보면,

- ① 요지작성만 하는 경우 1건(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② 속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8건(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시도경제협의회),
- ③ 녹음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0건,
- ④ 요지작성,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4건(고용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 ⑤ 요지작성, 녹음기록으로 2건(정보공개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 ⑥ 속기록, 녹음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1건(국가교통위원회),
- ⑦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0건,
- ⑧ 서면회의만을 진행하여 회의록 형태가 없는 경우 2건(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 있다.

차관급 회의는 다른 회의유형보다 속기록 작성형태의 회의록 작성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공개여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회의는 2건 (기부심사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으로 이 회의들은 요지와 속기록, 녹음기록도 공개로 정하였다.

부분공개는 없고, 비공개는 14건이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이 중 제5호(과정 중)와 제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는 자체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1조(영업비밀관련정보 대외공개금지)’ 안건이 개별기업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표 7〉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23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고용정책심의회	16	10		○	○		비공개	5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료없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자료없음					
국가교통위원회	2	28			○	○	비공개	5, 6
경제관계장관회의			282		○		비공개	5
시도경제협의회			14		○			5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9	6			○		비공개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3	7			○		비공개	5,6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3	1		○			비공개	5,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63		○		비공개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없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		○		비공개	6
경제자유구역위원회			33	○			비공개	7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							
외국인투자위원회			46	○	○		비공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31	2			○		비공개	2, 6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	3			○		비공개	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6	○		○	비공개	5
기부심사위원회	14	3		○	○		공개	5
도서개발심의위원회	2							
정보공개위원회		8		○		○	공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1	23		○	○		비공개	6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는 28건이 분석대상이었으나 이중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는 2017년에 폐지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공개 받은 자료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회의형태를 보면, 서면인지, 대면인지 구분하지 않고 회의수가 있는 경우가 16건으로 다수여서 서면, 대면의 분석이 거의 무의미하지만 분석하면, 대면만으로도 이루어진 회의가 4건(국가기록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서면만 이루어진 회의는 1건(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를 보면, 26건의 회의 중 22개 회의가 요지작성을 하고 있어 다른 국무총리, 차관급 회의에 비해 회의록 작성이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지를 작성하고 있는 22건 중 요지작성과 함께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10개 회의이며, 요지작성과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5개 회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기록하는 경우는 1건(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회의록 공개여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회의는 4건(원자력안전위원회,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4건의 회의 중 3건은 요지작성만을 기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요지작성과 속기록, 녹음기록을 하는 회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안위 출범('11년10월)이후부터 현재('17년5월)까지 총 69회 개최되었는데, 회의록(속기)은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4건(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합정 항공기동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는 요지작성은 공개하고 의사록은 비공개한다.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들도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 가운데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회의는 10건이며,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역시 제5호와 제6호가 가장 많다. 제7호(경영상, 영업상 비밀)가 다른 국무회의, 차관급 참석회의보다 많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항이 아니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개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제2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회의록)제7항 및 「증권선물위원회」제8조(의사록)제7항에 의거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재판·수사,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회의록) 제5항 및 「증권선물위원회」제8조(의사록)제5항에 의거 속기록은 비공개로 하였다. 단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증선위)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도 역시 공개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고 하였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정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 8〉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28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4	12		○			공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43	○		○	비공개	4, 6
합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			3	○			부분공개	6
국방부 정책회의			48		○	○	비공개	2, 5
군무회의			15		○	○	비공개	2, 5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88	○		○		2
금융위원회			267	○	○		비공개(속), 공개(의)	개별
증권선물위원회			211	○	○		비공개(속), 공개(의)	개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20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10	1			○		공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12	4		○			비공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			33	○			비공개	5, 6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594	○	○		알수없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4	○			공개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무역위원회			99	○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			95	○	○		비공개	5, 7
원자력안전위원회			69	○	○	○	공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40	○		○	비공개	5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12	○			비공개	7
순직보상심사위원회			13	○		○	비공개	5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17년 폐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7		○	○		부분공개	5
기록물공개심의회	8	13		○	○		부분공개	5
기록물평가심의회		4		○	○		부분공개	5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15		○	○		비공개	5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11		○	○		비공개	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	8		○	○		비공개	7

결론: 문제점 및 회의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회의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운영을 살펴보고자 지정회의 대상 회의의 개최, 회의록 생산, 회의록 생산 형태, 공개 유무와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지정회의의 지정 문제

지정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국가기록원)이 지정하는 회의이지만,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런데, 분석결과를 보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서면회의만 있는 회의 국무총리급 회의 5건, 차관급 회의에서 서면회의만 있는 회의는 2건이다.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하도록 지정회의로 정하여졌을 때에는 그만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정되었을 것이 상식적인데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서면회의만 있었다는 것은 과연 지정회의로 정하여 질 만한 회의였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면회의일 경우, 회의록 관리 문제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도 없고, 그러므로 회의형태도 알 수 없다.

서면일 경우에도 결정된 바가 있을 것임에도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결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요지작성 선호

공개, 부분공개 포함하여 7건, 이중 요지작성이 아닌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참석 회의 전체 20건 중 4건이다.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10건이며 이

중 6건은 요지작성만을 기록하여 공개한다.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들도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꺼려함을 알 수 있다.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는 보통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이 사유가 되었고, 세 가지 회의 유형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제6호가 가장 많은 비공개 사유가 되었다.

내부의사결정에 발생하는 정보를 알고, 국정운영에 책임성을 높이고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다시 제5호가 많이 언급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공개 되어야 할 회의, 회의록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비공개 되는 절차나 사유에 대한 보다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공개 회의, 회의록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의록 생산과 관리가 아닌 회의 공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의 정보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민주행정, 투명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모든 회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대상의 확대되어야 하고, 지정회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되어야 한다.

- 모든 회의록은 충실히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회의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 다수의 회의록의 요지작성의 형태로 끝나는데, 과연 요지작성만으로 회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지작성에 회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서식의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회의공개법

[번역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ection 552b 공개회의

(a)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관"이란 section 552(e)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구가 이끄는 기관 그리고 기관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의 분과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구성원의 다수를 해당 직위에 임명한다.
- (2) "회의"란 공식 기관 업무의 공동 수행 또는 처분을 결정하거나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개별 기관 구성원 수 이상이 참여한 심의를 의미한다. 단, subsection (d) 또는 subsection (e)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심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 (3) "구성원"이란 기관을 이끄는 합의기구에 속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b) 구성원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subsection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全) 기관 회의의 전 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c) 기관이 공익을 위해 다르게 판단한 경우에 subsection (b) 두 번째 문장은 기관 회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의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경우, subsection (d)과 subsection (e)은 이 조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 회의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A) 행정 명령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국방이나 외교 정책을 위해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허용되고, (B) 해당 행정 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분류된 사안
- (2) 오로지 기관의 내부 인사 규칙 및 관행 관련
- (3) 법률(section 552 이외)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 단, 해당 법률은 (A) 쟁점에 관한 재량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안을 규정하거나, (B) 구체적 보류 기준을 확립하거나 보류되는 사안의 구체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 (4) 개인에게서 얻거나 특권이 성립됐거나 기밀인 영업 비밀 및 상업적 정보나 재정적 정보
- (5) 특정인의 범죄를 고발하거나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견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 (6) 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개인적 성질의 정보를 공개한다.

- (7)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수사 기록 또는 (서면) 수사 기록에 포함됐을 정보. 단, 이러한 기록이나 정보의 제출은 (A) 법 집행 절차를 방해, (B) 공평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결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 (C) 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 (D)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수사 중에 수집하거나 합법적 국가 안보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집한 기록의 경우에 취재원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기밀 정보를 공개, (E) 수사 기법과 절차를 공개, (F) 법 집행 요원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 (8)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에 의해, 그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해 준비된 검사, 운영 또는 현황 보고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정보.
- (9) 성급한 공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 (A) 통화, 증권, 상품 또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의 경우, (i) 통화,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현저한 금융 투기를 야기하거나 (ii) 특정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
 - (B) 기타 기관의 경우, 기관이 제안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단, 기관이 제안 조치의 내용이나 성질을 이미 일반에 공개했거나 법률에 따라 기관이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B)가 적용되지 않는다.
- (10) 기관의 소환장 발부, 민사 소송이나 절차, 외국 법원이나 국제 재판소의 소송 또는 중재에 대한 기관의 참여, 이 편 제554조의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 청구 후 기록에 대한 결정 등 기관의 공식 재결에 관한 구체적 사건에서 기관의 시작, 수행이나 처분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

(d)(1) subsection (c)에 따른 조치는 (subsection (a)(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기관 구성원의 전체 중 다수가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만 취한다. 기관 구성원의 표결은 각각의 기관 회의에서 subsection (c)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 또는 subsection (c)에 따라 유보하기로 제안된 정보에 대해 이뤄진다. 일련의 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일련의 회의가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예정된 경우, 일련의 회의에서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이나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1회 표결할 수 있다. 해당 표결에 참여한 기관 구성원 각각의 표결은 기록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2) 회의의 일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subsection (c) paragraph (5), (6), (7)에 언급된 이유 중 하나를 근거로 기관이 해당 부분을 일

반에 비공개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기관은 구성원 1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기록 표결로써 표결한다.

(3)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이 이뤄지면, 기관은 1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 결과 사본을 일반에 공개한다. 회의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기관은 subsection (d)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 사항과 해당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조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인원과 그 소속에 관한 목록을 1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한다.

(4) 회의의 대부분이 subsection (c) paragraph (4), (8), (9)(A), (10) 또는 이러한 사유의 결합을 근거로 적절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거나, 기관은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시작할 때에 회의의 비공개분을 비공개하기로 기록 표결로써 표결하는 경우, 규칙으로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하는 표결의 사본이 일반에 공개된다. subsection (d) paragraph (1), (2), (3) 그리고 subsection (e)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회의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은 subsection (c)에 따라 비공개할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 및 회의 일부의 시간, 장소 및 주제를 일반에 공고한다.

(e)(1) 각 회의에서 기관은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일반 공개 여부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기관 구성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고한다.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를 조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공고하고, 회의를 조기에 소집하는 경우에 기관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그리고 일반 공개 여부를 공고한다.

(2) 회의의 시간이나 장소는 기관이 이러한 변경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일반에 공고한 경우에만 paragraph (1)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회의의 주제 또는 회의나 회의 일부의 일반 공개 여부에 대한 기관의 결정은 (A) 기관 전체 구성원의 다수가 기관 업무에 필요하고 변경에 대한 조기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고, (B) 기관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러한 변경과 해당 변경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공고한 경우에만 subsection (e)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3) 또한 subsection (e)에 따른 각 공고 직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회의의 공개 여부, 절차의 변경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한 공지 사항은 발행을 위해 공보에 제출된다.

- (f)(1) subsection (c) paragraph (1)에서 (10)에 따라 비공개된 모든 회의에서 기관의 법무 자문위원이나 최고 법률책임자는 자신의 의견으로써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련하여 개별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 기관은 이러한 증명서의 사본을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기재한 회의 감독관의 진술서와 함께 보유한다. 기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각 회의의 절차나 회의의 일부를 전부 기록하며, 적절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한다. 단, subsection (c) paragraph (8), (9)(A), (10)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의 경우, 기관은 이러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 중 하나를 유지한다. 해당 회의록에는 논의된 모든 사안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고, 취해진 조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덧붙여 각 사안에 제기된 각자의 입장을 서술하며 호명 투표의 기록(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과 그 사유가 기재된다.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이러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2) 기관은 의제의 항목 또는 회의에서 얻은 증인의 증언 항목에 대한 논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제(1)호에서 요구되는 경우)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즉시 일반에 공개한다. 단, 기관이 제(c)항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결정한 논의나 증언의 항목은 제외된다. 발언자 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필사 기록, 회의록 또는 전자 기록의 필사 기록 사본은 복사하거나 필사하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제공된다. 기관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에 대한 필사 기록의 완전한 사본, 회의록의 완전한 사본 또는 완전한 전자 기록을 해당 회의 이후 최소한 2년 또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가 개최되도록 한 기관의 절차가 종료된 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유지한다.
- (g) 이 조의 요건을 따르는 각 기관은 미 행정위원회 의장실(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과 협의해, 이 조항의 제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서 subsection (f)의 요건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한다. 또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최소 30일 동안 공보에 공포한다. 기관이 여기에 규정된 기간까지 해당 규칙을 공포하지 않으면, 누구나 해당 기관이 이러한 규칙을 공포하도록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제한 기간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subsection (g)에 따라 공포된 기관 규칙일지라도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서 subsection (f)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파기하고 해당 조항을 따르는 규칙의 공포를 요구하도록 컬럼비아 특별

구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1) 미 지방 법원은 확인판결, 금지명령구제 또는 적절한 다른 구제 방법으로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서 subsection (f)를 집행할 관할권을 갖는다. 누구나 이 조항의 위반이 발생한 회의 이전 또는 그 후 60일 이내에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기관이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회의의 공고를 초기에 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의의 공고 이후 60일 이전에 언제든지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관 회의가 개최된 지역이나 문제되는 기관의 본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 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송달한다. 피고는 자신의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의 부분을 비공개로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러한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법원은 질서 있는 집행과 공익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형평법상 구제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조를 장래에 위반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또는 이 section의 subsection (c)에 따라 보류가 불가한 회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이나 회의록의 일부를 기관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

(2) 법률로써 기관의 조치를 검토할 권한이 다른 방식으로 부여된 연방 법원은 다른 준거법에 따라 소송 절차에 적절하게 참여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이 조에 대한 기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하다 판단되는 구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는 이 조의 위반이 발생한 기관 회의에서 취하거나 논의된 기관의 조치(이 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정보를 보류하는 조치 제외)를 파기, 금지 또는 무효화하는 관할권을 paragraph (1)을 근거로 단독 보유하도록 해석되지 않는다.

(i) 법원은 이 section의 subsection (g) 또는 subsection (h)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보수와 기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원고가 사소한 이유나 지연 목적으로 소송을 개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원고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원은 미국 정부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j) 이 조를 따르는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1) 이전 1년 동안에 발생한 이 조에 따른 기관 정책과 절차의 변경

(2) 개최된 회의의 수, 비공개 회의에 적용된 면제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 따른 공고 일 수(日數)의 목록

(3) 기관이 이 조를 실행하면서 발생한 소송이나 정식 이의제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이 조에 따른 기관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 법률의 변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k) 이 조는 이 chapter section 552에 따른 현재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이 section의 subsection (f)에 규정된 필사 기록, 전자 기록이나 회의록을 복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section 552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 subsection (c)에 규정된 면제에 따른다. 「미합중국법」 제44편제33장은 이 section의 subsection (f)에 규정된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및 회의록에 적용되지 않는다.

(l) 이 조는 의회에 정보를 주지 않을 권한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관 회의나 회의 일부의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m) 이 section은 section 552a에 따라 개인이 접근 가능한 기록을 개인에게 주지 않을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조에서 요구하는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이 포함된다.

(Pub. L. 94-409 § 3(a), 1976년 9월 13일 삽입, 90 Stat. 1241; Pub. L. 104-66, title III, § 3002, 1995년 12월 21일 개정, 109 Stat. 734.)

본문 참고

subsection (a)(1)에 언급된 section 552 subsection(e)는 Pub. L. 99-570, section 1802(b)에 따라 section 552(f)로 재지정됐다.

subsection (g)에 언급된 이 조의 제정일부 180일 이후는 1976년 9월 13일에 승인된 Pub. L. 94-409의 제정일부 180일 이후를 의미한다.

[개정]

1995년—Subsectio (j), Pub. L. 104-66은 subsection (j)를 전면 개정한다. 개정 전에 subsection (j)는 “이 section을 따르는 각 기관은 해당 요건의 준수에 대해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여기에는 일반에 공개된 기관 회의의 총수,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의 총수, 해당 회의를 비공개로 한 이유 그리고 소송에서 기관이 부담한 비용(기관이 지불했는지를 불문함)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기관에 제기된 소송의 설명이 포함된다.”이었다.

발효일

Pub. L. 94-409의 section 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아래 기재된 약칭의 주석 참조)의 규정은 제정일(1976년 9월 13일)부터 180일 후에 발효된다.

“(b) 「미합중국법」 title 5 section 552b subsection (g)는 이 법 section 3(a)로 삽입됨에 따라 제정(1976년 9월 13일)과 함께 발효된다.”

1976년 개정 법률의 약칭

Pub. L. 94-409의 section 1은 “이 법률[이 section 제정, 이 title의 amending section 551, 552, 556, 557, Pub. L. 92-463의 section 10, Title 39의 section 410)은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로 규정한다.

보고 요건의 종료

2000년 5월 15일에 발효된, 의회 보고서(House Document) No. 103-7(이 section의 subsection (j)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151면에 기재)에 열거된 연간, 반기 또는 기타 정기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효력 종료는 Title 31, 화폐 및 재정(Money and Finance)의 section 1113 아래에 주석으로 기재된 개정 Pub. L. 104-66의 section 3003을 참조한다.

미 행정위원회의 종료

미 행정위원회의 종료는 이 title의 section 591에 기재된 Pub. L. 104-52의 title IV를 참조한다.

정책의 선언과 목적의 설명

Pub. L. 94-409의 section 2는 “연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현 가능한 최대도 일반에 부여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반면에 개인의 권리와 그 책임을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위에 기재된 약칭의 주석 참조)의 목적이다.”라고 규정한다.

참고: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laws/administrative-procedure/552b.html>

<http://codes.lp.findlaw.com/uscode/5/I/5/II/552b/notes>

§552b. Open meetings

- Sunshine Act

5 U.S.C. 552B – OPEN MEETINGS

(a)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1) the term “agency” means any agency, as defined in section 552(e) of this title, headed by a collegial body composed of two or more individual members, a majority of whom are appointed to such position by the President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nd any subdivision thereof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agency;
- (2) the term “meeting” means the deliberations of at least the number of individual agency members required to take action on behalf of the agency where such deliberations determine or result in the joint conduct or disposition of official agency business, but does not include deliberations required or permitted by subsection (d) or (e); and
- (3) the term “member” means an individual who belongs to a collegial body heading an agency.

(b) Members shall not jointly conduct or dispose of agency business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c), every portion of every meeting of an agency shall be open to public observation.

(c) Except in a case where the agency finds that the public interest requires otherwise, the second sentence of subsection (b) shall not apply to any portion of an agency meeting, and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d) and (e) shall not apply to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such meeting otherwise required by this section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where the agency properly determines that such portion or portions of its meeting or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is likely to—

- (1) disclose matters that are (A)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criter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be kept secret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and (B) in fact properly classified pursuant to such Executive order;

- (2) relate solely to the internal personnel rules and practices of an agency;
- (3) disclose matters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other than section 552 of this title), provided that such statute (A) requires that the matters be withheld from the public in such a manner as to leave no discretion on the issue, or (B) establishes particular criteria for withholding or refers to particular types of matters to be withheld;
- (4) disclose trade secrets and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and privileged or confidential;
- (5) involve accusing any person of a crime, or formally censuring any person;
- (6) disclose information of a personal nature where disclosure would constitute a clearly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 (7) disclose investigatory records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or information which if written would be contained in such record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duction of such records or information would (A) interfere with enforcement proceedings, (B) deprive a person of a right to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adjudication, (C)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D) disclose the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and, in the case of a record compiled by a criminal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the cour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r by an agency conducting a lawful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investig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furnished only by the confidential source, (E) disclos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procedures, or (F) endanger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 (8) disclose information contained in or related to examination, operating, or condition reports prepared by, on behalf of, or for the use of an agency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r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9) disclose information the premature disclosure of which would—
 - (A) in the case of an agency which regulates currencies, securities, commodit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be likely to (i) lead to significant financial speculation in currencies, securities, or commodities, or (ii)

significantly endanger the stability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B) in the case of any agency, be likely to significantly frustrate implementation of a proposed agency action, except that subparagraph (B) shall not apply in any instance where the agency has already disclosed to the public the content or nature of its proposed action, or where the agency is required by law to make such disclosure on its own initiative prior to taking final agency action on such proposal; or

(10) specifically concern the agency's issuance of a subpoena, or the agency's participation in a civil action or proceeding, an action in a foreign court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an arbitration, or the initiation, conduct, or disposition by the agency of a particular case of formal agency adjudication pursuant to the procedures in section 554 of this title or otherwise involving a determination on the record after opportunity for a hearing.

(d)(1) Action under subsection (c) shall be taken only when a majority of the entire membership of the agency (as defined in subsection (a)(1)) votes to take such action. A separate vote of the agency members shall be taken with respect to each agency meeting a portion or portions of which are proposed to be closed to the public pursuant to subsection (c), or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which is proposed to be withheld under subsection (c). A single vote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a series of meetings, a portion or portions of which are proposed to be closed to the public, or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concerning such series of meetings, so long as each meeting in such series involves the same particular matters and is scheduled to be held no more than thirty days after the initial meeting in such series. The vote of each agency member participating in such vote shall be recorded and no proxies shall be allowed.

(2) Whenever any person whose interests may be directly affected by a portion of a meeting requests that the agency close such portion to the

public for any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6), or (7) of subsection (c), the agency, upon request of any one of its members, shall vote by recorded vote whether to close such meeting.

(3) Within one day of any vot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the agenc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a written copy of such vote reflecting the vote of each member on the question. If a portion of a meeting is to be closed to the public, the agency shall, within one day of the vot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of this subsection, make publicly available a full written explanation of its action closing the portion together with a list of all persons expected to attend the meeting and their affiliation.

(4) Any agency, a majority of whose meetings may properly be closed to the public pursuant to paragraph (4), (8), (9)(A), or (10) of subsection (c), or any combination thereof, may provide by regulation for the closing of such meetings or portions thereof in the event that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votes by recorded vote at the beginning of such meeting, or portion thereof, to close the exempt portion or portions of the meeting, and a copy of such vote, reflecting the vote of each member on the question,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 (e) shall not apply to any portion of a meeting to which such regulations apply: Provided, That the agency shall,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c), provide the public with public announcement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the meeting and of each portion thereof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e)(1) In the case of each meeting, the agency shall make public announcement, at least one week before the meeting,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the meeting, whether it is to be open or closed to the public, and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official designated by the agency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about the meeting. Such

announcement shall be made unles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determines by a recorded vote that agency business requires that such meeting be called at an earlier date, in which case the agency shall make public announcement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such meeting, and whether open or closed to the public,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2) The time or place of a meeting may be changed following the public announcement required by paragraph (1) only if the agency publicly announces such change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The subject matter of a meeting, or the determination of the agency to open or close a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to the public, may be changed following the public announcement required by this subsection only if (A) a majority of the entire membership of the agency determines by a recorded vote that agency business so requires and that no earlier announcement of the change was possible, and (B) the agency publicly announces such change and the vote of each member upon such change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3) Immediately following each public announcement required by this subsection, notice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a meeting, whether the meeting is open or closed, any change in one of the preceding, and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official designated by the agency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about the meeting, shall also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f)(1) For every meeting closed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10) of subsection (c), the General Counsel or chief legal officer of the agency shall publicly certify that, in his or her opinion, the meeting may be closed to the public and shall state each relevant exemptive provision. A copy of such certification, together with a statement from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meeting setting forth th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and the persons present, shall be retained by the agency. The agency shall maintain a complete transcript or electronic recording adequate to

record fully the proceedings of each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pursuant to paragraph (8), (9)(A), or (10) of subsection (c), the agency shall maintain either such a transcript or recording, or a set of minutes. Such minutes shall fully and clearly describe all matters discussed and shall provide a full and accurate summary of any actions taken, and the reasons therefor, including a description of each of the views expressed on any item and the record of any rollcall vote (reflecting the vote of each member on the question). All documents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shall be identified in such minutes.

(2) The agency shall make prompt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a place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transcript, electronic recording, or minutes (as required by paragraph (1)) of the discussion of any item on the agenda, or of any item of the testimony of any witness received at the meeting, except for such item or items of such discussion or testimony as the agency determines to contain information which may be withheld under subsection (c). Copies of such transcript, or minutes, or a transcription of such recording disclosing the identity of each speaker, shall be furnished to any person at the actual cost of duplication or transcription. The agency shall maintain a complete verbatim copy of the transcript, a complete copy of the minutes, or a complete electronic recording of each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after such meeting, or until one year after the conclusion of any agency proceeding with respect to which the meeting or portion was held, whichever occurs later.

(g)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ection,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published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of at least thirty days and opportunity for written comment by any person, promulgate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f) of this section. Any person may bring a proceeding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require an agency to promulgate such regulations if such agency has not promulgated such regulations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herein. Subject to any limitations of time provided by law, any person may bring a proceeding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set aside agency regulations issu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that are not in accord with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f) of this section and to require the promulgation of regulations that are in accord with such subsections.

- (h)(1) 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jurisdiction to enforce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f) of this section by declaratory judgment, injunctive relief, or other relief as may be appropriate. Such actions may be brought by any person against an agency prior to, or within sixty days after, the meeting out of which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arises, except that if public announcement of such meeting is not initially provided by th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uch action may be instituted pursuant to this section at any time prior to sixty days after any public announcement of such meeting. Such actions may be brought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agency meeting is held or in which the agency in question has its headquarters, or in the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In such actions a defendant shall serve his answer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service of the complaint. The burden is on the defendant to sustain his action. In deciding such cases the court may examine in camera any portion of the transcript, electronic recording, or minutes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and may take such additional evidence as it deems necessary. The court, having due regard for orderly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may grant such equitable

relief as it deems appropriate, including granting an injunction against future violations of this section or ordering the agency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such portion of the transcript, recording, or minutes of a meeting as is not authorized to be withheld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2) Any Federal court otherwise authorized by law to review agency action may, at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properly participating in the proceeding pursuant to other applicable law, inquire into violations by the agenc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afford such relief as it deems appropriate. Nothing in this section authorizes any Federal court having jurisdiction solely on the basis of paragraph (1) to set aside, enjoin, or invalidate any agency action (other than an action to close a meeting or to withhold information under this section) taken or discussed at any agency meeting out of which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arose.

(i) The court may assess against any party reasonable attorney fees and other litigation costs reasonably incurred by any other party who substantially prevails in any action brough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g) or (h) of this section, except that costs may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only where the court finds that the suit was initiated by the plaintiff primarily for frivolous or dilatory purposes. In the case of assessment of costs against an agency, the costs may be assessed by the court against the United States.

(j)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annually report to the Congress regarding the following:

(1) The changes in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receding 1-year period.

(2) A tabulation of the number of meetings held, the exemptions applied to close meetings, and the days of public notice provided to close meetings.

(3) A brief description of litigation or formal complaint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by the agency.

(4) A brief explanation of any changes in law that have affect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k) Nothing herein expands or limits the present rights of any person under section 552 of this title, except that the exemp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shall govern in the case of any request made pursuant to section 552 to copy or inspect the transcripts, recordings, or minutes described in subsection (f) of this section. The requirements of chapter 33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shall not apply to the transcripts, recordings, and minutes described in subsection (f) of this section.

(l) This section does not constitute authority to withhold any information from Congress, and does not authorize the closing of any agency meeting or portion thereof required by any other provision of law to be open.

(m) Nothing in this section authorizes any agency to withhold from any individual any record, including transcripts, recordings, or minutes required by this section, which is otherwise accessible to such individual under section 552a of this title.

(Added Pub. L. 94-409, § 3(a), Sept. 13, 1976, 90 Stat. 1241; amended Pub. L. 104-66, title III, § 3002, Dec. 21, 1995, 109 Stat. 734.)

References in Text

Section 552(e) of this title, referred to in subsec. (a)(1), was redesignated section 552(f) of this title by section 1802(b) of Pub. L. 99-570.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ection, referred to in subsec. (g), means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Pub. L. 94-409, which was approved Sept. 13, 1976.

Amendments

1995—Subsec. (j). Pub. L. 104-66 amended subsec. (j) generally. Prior to

amendment, subsec. (j) read as follows: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annually report to Congress regarding its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including a tab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agency meetings open to the public, the total number of meetings closed to the public, the reasons for closing such meetings, and a description of any litigation brought against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any costs assessed against the agency in such litigation (whether or not paid by the agency).”

Effective Date

Section 6 of Pub. L. 94-409 provided that: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this Act [see Short Title note set out below] shall take effect 180 days after the date of its enactment [Sept. 13, 1976].

“(b) Subsection (g) of section 552b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s added by section 3(a) of this Act, shall take effect upon enactment [Sept. 13, 1976].”

Short Title of 1976 Amendment

Section 1 of Pub. L. 94-409 provided: “That this Act [enacting this section, amending sections 551, 552, 556, and 557 of this title, section 10 of Pub. L. 92-463, set out in the Appendix to this title, and section 410 of Title 39, and enacting provisions set out as notes under this section] may be cited as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Termination of Reporting Requirements

For termination, effective May 15, 2000, of provisions of law requiring submittal to Congress of any annual, semiannual, or other regular periodic report listed in House Document No. 103-7 (in which the report required by subsec. (j) of this section is listed on page 151), see section 3003 of Pub. L. 104-66, as amended, set out as a note under section 1113 of Title 31, Money and Finance.

Termination of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United States

For termination of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United States, see provision of title IV of Pub. L. 104-52, set out as a note preceding section 591 of this title.

Declaration of Policy and Statement of Purpose

Section 2 of Pub. L. 94-409 provided that: "It is hereby declared to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public is entitled to the fullest practic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is the purpose of this Act [see Short Title note set out above] to provide the public with such information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발행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홈페이지	www.opengirok.or.kr
이메일	cfoi@opengirok.or.kr
연락 및 후원문의	02) 2039-8361~2
팩스	02) 6919-2039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355172